



기분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2016년 도고면 종합감사결과



감사담당관

목 차

- I. 감사 실시 개요 / 2
- II. 감사 결과 / 3
- III. 감사 결과 처분 지시 / 4
- IV. 수 범 사례 / 36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개요

- 대상기관 : 도고면
- 감사기간 : 2016. 9. 6. - 9. 8.(3일간)
- 감사범위 : 2013. 11. 1.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열린감사팀장 등 6인(1반)

□ 감사중점사항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및 부조리 예방
- 복지업무 추진실태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창의적 업무능력 제고
- 개선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Ⅱ. 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특수 시책	수범 사례	건의 사항	민원 사항
계	시 정	주 의	개선	현지				
16	5	9	-	2	-	2	-	-

□ 재정상 조치

(단위 : 원)

구 분	계	추 징	회 수	감 액	비 고
계	2,075,300	10,000	2,065,300		
본 처 분	2,075,300	10,000	2,065,300		
현지처분	-	-	-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 징 계	경 징 계	경고·훈계	주 의	비 고
1	-	-	-	1	

Ⅲ. 감사결과 처분지시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확인서 및 지적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14건	시정 5 주의 9	2,075,300 10,000 2,065,300	계 추징 회수
1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2	○ 쌀소득변동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1,930,000	회수
3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소홀	주의		
4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확인 및 정산업무 소홀	시정	135,300	회수
5	○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전자입찰에 따른 업무 소홀	주의		
6	○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업무 소홀	주의		
7	○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처리 소홀	시정	10,000	추징
8	○ 인증기용 수입증지요금 수납업무 소홀	주의		
9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소홀	주의		
10	○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관련	주의		
11	○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소홀	주의		
12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	시정		
13	○ 효도수당 지급대상 부적정	주의		
14	○ 임차 용역비 선금 지출 부적정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조치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2건		시정 2 주의 0		
1	민방위 업무 소홀	관련 법규에 맞게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민방위 자재를 교체 및 수리하여 적정관리하 시 바람	시정	-	
2	수방자재·공구 관리 소홀	관련 법규에 맞게 수방 자재를 비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16년도 상반기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수강생 수	비고
컴퓨터교실	6명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2016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고 기간 중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휴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고, 기준미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반발 등을 우려하여 프로그램을 존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강사료로 지급과 주민욕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아산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평균 수강인원이 10명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 실시 후 폐지 등 조치를 취하여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쌀소득변동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930,000원(회 수)

【지적내용】

가. 쌀소득 변동직불금 지급현황

(단위: m², 원)

지 급 년 도	신청인	농지지번	토지이용실태 현황				쌀직불금(변동) 지급현황		
			계	답	기타	사유	지급액	적격액	부적격
계	5명	5필지	21,473	2,900	15,285		2,220,190	289,890	1,930,300
2015년	○○○	◇◇리 61-1	4,526	0	4,584	밭	473,220	0	473,220
2015년	○○○	◇◇리 72-8	4,734	0	0	추사	374,400	0	387,400
2015년	○○○	◇◇리 325-1	3,875	0	3,812	밭	381,050	0	381,050
2015년	○○○	◇◇리 23	3,812	900	3,626	밭, 폐경	452,420	89,970	362,450
2015년	○○○	◇◇리 411-1	4,526	2,000	3,263	폐경	526,100	199,930	326,170

나. 위법·부당내용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및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이어야 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같은 법률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에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고 하였고, 변동직접지불금

은 같은 법률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2015년 쌀직불금 신청대상자중 위 변동직불금 지급현황의 ○○○의 4명이 신청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 현황을 파악 농지의 형상 또는 기능을 유지하고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직접 재배하지 않으며 전 또는 시설하우스 등으로 이용하는 농지는 변동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어야 함에도 적격농지로 선정하여 1,930,3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 지급된 직불금 1,930,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m³, 천원)

공 사 명	전석쌓기 물량 검토		과다계상 금 액	사 업 시행결의	계약체결	비고
	당 초 설계물량	정 상 설계 물량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142	134	1,501	2014.04.07	2014.04.17	
◇◇3리 농로 포장공사	20	17	507	2015.03.25	2015.04.01	

나. 위법·부당내용

-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시에는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제반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2015.3.5.)]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1호 가목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도고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소하천 호안정비공사의 1건에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전석쌓기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비 2,008,000원(◇◇소하천 호안정비공사 : 1,501,000원, ◇◇3리 도로확·포장공사 : 507,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상태로 도급자와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확인 및 정산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 사 명	도급금액 (천원)	환경보전비			공사기간	도 급 자 (대표)
		사 용 계획서	지급액 (원)	사용내역		
계			135,300			
◇◇3리 도로 확·포장공사	11,416.0	미제출	71,400	일용 노무비 지급	2015.03.20. ~ 2015.04.21.	◇◇건설(주) (○○○)
◇◇3리 농로포장공사	10,534.2	"	63,900	방진용 부직포 구입	2015.04.02 ~ 2015.04.28	(주)◇◇◇◇ 씨(○○○)

※ 환경보전비 지급액은 제경비 포함 금액임.

나.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비용(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사용계획서를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발주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¹⁾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도고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급자로부터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착공계 제출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이므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현장으로 환경보전비로 일용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적정하게 정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71,4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며,

“◇◇3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도 도급자로부터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서 제출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만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정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63,9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135,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1) 증빙서류

가)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 입출금사본, 영수증 사본
나)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다)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전자입찰에 따른 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개요	예정금액 (천원)	비고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리 일원	전석쌓기 H=1.5~2m, L=145m	47,000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 2014.04.09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같은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제1장 제8절 제1호 다목에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²⁾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도고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전자입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지급시 정산을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입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 등에 명시(안내)할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3년~2016년 까지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 보수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 단지내 국화식재작업” 외 37건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보증)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준공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현황

연번	공사명	사업비(천원)			도 급 계약일	준 공 검사일	도급자	하자보증 기 간
		계	도급	관급				
계	38건	431,863	316,424	115,439				
1	△△△△단지 내 국화식 재작업	10,334	10,334		2013. 11.01	2013. 11.08.	○청	13.11.07. ~ 14.11.07.
2	△△1리 마을안길 포장공 사	16,459	10,115	6,344	2013. 11.07	2013. 12.10.	☆☆건설 (주)	13.12.12. ~ 15.12.11.
3	△△1리 배수관로 설치공 사	9,243	4,165	5,078	2013. 11.25	2013. 12.11.	☆☆건설 (주)	13.12.12. ~ 15.12.11.
4	△△1리 배수로정비공사	29,138	13,905	15,233	2013. 11.27	2013. 12.24.	△△△건 설(주)	13.12.23. ~ 16.12.22.
5	△△1리 배수로정비공사	29,270	10,637	18,633	2013. 12.02	2013. 12.23.	□□건설 (주)	13.12.24. ~ 15.12.23.
6	△△△△진입로 영산홍 보식공사	4,850	4,850		2014. 04.14	2014. 04.30.	(주)◇◇◇ 디자인	14.05.04. ~ 16.05.03.
7	△△4리 마을안길 보수공 사	2,118	2,118		2014. 05.22	2014. 05.29.	△△△건 설(주)	14.05.31. ~ 17.05.30.
8	△△△△어울림마당 화단 조성 및 테마단지 내 코 스모스 식재공사	8,531	8,531		2014. 06.02	2014. 06.13.	○청	14.06.12. ~ 15.06.12
9	유채및 가을꽃 식재작업	7,357	7,357		2014. 10.10	2014. 10.22.	○청	14.10.19. ~ 15.10.19.
10	△△2리 및 △△리 전석 쌓기공사	14,556	13,160	1,396	2014. 10.23	2014. 11.05.	△△△건 설(주)	14.11.06. ~ 16.11.05.
11	△△△사무소 및 주민자 치센터 전기설비공사	1,650	1,650		2015. 01.16.	2015. 01.23.	(주)○○전 설	15.01.21 ~ 16.01.20
12	△△리 마을안길 정비공 사	14,702	14,702		2015. 03.05.	2015. 03.17.	△△△건 설(주)	15.03.16 ~ 17.03.15
13	△△3리 도로확포장공사	16,719	11,416	5,303	2015. 03.16.	2015. 04.20.	☆☆건설 (주)	15.04.21 ~ 18.04.20
14	테마공원 내 유채식재 공 사	4,827	4,827		2015. 03.18.	2015. 03.24.	○청	15.03.23 ~ 16.03.23
15	어울림마당 야외무대 보 수공사	8,089	8,089		2015. 04.28.	2015. 05.12.	(주)◇◇◇ 디자인	15.05.07 ~ 17.05.06
16	△△리 농업용관정 수중 모터펌프 교체공사	4,550	4,550		2015. 05.27.	2015. 06.01.	(주)△△엔 지니어링	15.05.29 ~ 16.05.28
17	△△△ 가로공원 및 화단 제초작업	8,216	8,216		2015. 05.28.	2015. 06.10.	○청	15.06.09 ~ 16.06.09
18	△△3리 마을안길확포장 공사	10,761	10,761		2015. 08.27.	2015. 10.06.	☆☆건설 (주)	15.10.12 ~ 18.10.11
19	△△1리 마을안길포장공 사	3,020	3,020		2015. 09.18.	2015. 10.06.	☆☆건설 (주)	15.10.12 ~ 18.10.11

연번	공사명	사업비(천원)			도 급 계약일	준 공 검사일	도급자	하자보증 기 간
		계	도급	관급				
20	△△1리 마을회관 국기계양대 설치 공사	1,600	1,600		2015.09.24.	2015.10.06.	△△산업	15.10.01 ~ 16.09.30
21	추석맞이 도로변 제초작업	970	970		2015.09.24.	2015.10.06.	○청	15.09.25 ~ 16.09.25
22	△△△테마파크 내 희망의거리 일원 국화 식재공사	2,668	2,668		2015.11.03.	2015.11.12.	○청	15.11.11 ~ 16.11.11
23	△△1리 전석쌓기 공사	73,091	65,301	7,790	2015.11.09.	2015.12.24.	㈜□□식재	15.12.20 ~ 18.12.27
24	△△리 농로포장 공사	4,731	4,731		2015.11.12.	2015.12.16.	△△△건설(주)	15.12.15 ~ 18.12.14
25	△△1리 전석쌓기 공사	15,854	15,854		2015.11.12.	2015.12.16.	△△△건설(주)	15.12.15 ~ 17.12.14
26	△△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13,271	4,779	8,492	2015.11.20.	2015.12.16.	□□건설산업(주)	15.12.14 ~ 17.12.13
27	△△△ 주민자치센터 3층 전기판넬 공사	5,000	5,000		2016.02.19.	2016.2.25.	◇◇산업	16.02.22. ~ 17.02.21.
28	△△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719	6,971	13,748	2016.03.14.	2016.3.28.	□□건설산업(주)	16.03.25. ~ 18.03.24.
29	△△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4,664	6,279	8,386	2016.03.14.	2016.3.28.	☆☆건설(주)	16.03.25. ~ 19.03.24.
30	△△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614	5,657	14,956	2016.03.17.	2016.4.15.	□□건설산업(주)	16.04.11. ~ 18.04.10.
31	면사무소 여자화장실 보수 및 지하 참고 설치 공사	6,100	6,100		2016.03.23.	2016.3.29.	◇◇장식	16.03.28. ~ 17.03.27.
32	△△3리 배수로 정비공사	16,803	6,723	10,080	2016.04.11.	2016.5.20.	△△△건설(주)	16.05.09. ~ 19.05.08.
33	△△리 농로포장공사	9,688	9,688		2016.04.11.	2016.5.20.	○○건설주식회사	16.05.09. ~ 19.05.08.
34	2016년도 지방하천 준설공사	10,396	10,396		2016.04.27.	2016.5.25.	△△△건설(주)	16.04.28. ~ 18.05.25.
35	△△리 배수로 정비공사	2,379	2,379		2016.06.03.	2016.6.29.	☆☆건설(주)	16.06.30. ~ 19.06.29.
36	△△2리 교행차로 설치공사	5,509	5,509		2016.06.17.	2016.7.26.	☆☆건설(주)	16.07.28. ~ 19.07.27.
37	주민자치센터 2층 거울 교체 등	2,145	2,145		2016.06.24.	2016.6.30.	▽▽공업사	16.06.28. ~ 17.07.27.
38	△△△ △△소류지 준설공사	1,270	1,270		2016.06.29.	2016.7.12.	△△△건설(주)	16.06.30. ~ 16.06.29.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처리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0,000원(추 징)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처리 소홀 현황

연도별	계	업무처리 소홀(유형)			비 고
		수수료 미징수	민원서류 미 표시	민원접수문서 결재 미실시	
계	31건				
2015	15건	○	○	○	
2016	16건	○	○	○	

나. 위법 · 부당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동법 시행규칙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동 규정 시행규칙 제17조(공람할 문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 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하고, 처리담당자는 문서를 접수하여 민원서류인 경우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급) 및 제74조(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증지로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도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건에 대해, 수수료 미징수 10건 10,000원, 민원서류 표시인 누락 및 담당자 및 결재(공람)권자의 미결재(공람)처리 31건 등 민원서류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징수 수수료 10,000는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증기용 수입증지요금 수납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증기용 수입증지요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납부자	금액	징수일	금고납부일	지연일수	비 고
계	152,100				
도고면	63,700	2016. 2. 11	2016. 2. 18	3	
	36,500	2016. 2. 29	2016. 3. 10	3	
	51,900	2016. 5. 04	2016. 5. 09	1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같은법 제63조(수납기관)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의하면 수입증지 요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6년 2월 11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수입증지요금 3건, 152,100원에 대하여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3일까지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증지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현황

(단위 : 원)

년 도	최저임금	보통인부임 (제조)	도고면 적용인부임			비고
			보통인부	제초	작업반장	
2014	41,680	63,326	40,000	70,000	70,000	
2015	44,640	64,150	50,000	80,000	90,000	
2016	48,240	65,674	50,000(상) 60,000(하)	80,000	90,000	

나. 위법·부당내용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결의 후 인건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임의의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보험을 또한 해마다의 고시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작업을 위한 인건비 산정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도 국토공원화 인부임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40,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제초 및 작업반장에 대하여는 산출근거없이 인부임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부사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관련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입금 현황

(단위 : 원)

년 도	지 연 횟 수			지 연 일	비 고
	소계	스티커	마대		
합 계	55	48	7		
2014	30	26	4	1일 ~ 2일	대장미기재 1건
2015	23	20	3	1일 ~ 4일	대장미기재 1건
2016	2	2	-	1일	대장미기재 2건

나. 위법·부당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위임사무를 철저히 하도록 도고면에 통보(관련문서: 자원순환과-2104(2012. 11. 21.)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를 위임받은 도고면에서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폐기물스티커”), 불연성마대, 등의 수불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판매대금 징수결의 및 납부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마대 판매대금의 경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마대 수납금의 납입기한을 지연(1일~4일)하였으며, 세입부분에 대하여 대장에 미기재(4건)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소홀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산감기동대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년도	구 분	공고기간	모집예 정인원	응시 인원	채용 인원	비고
2014		1.6 ~ 1.17.	9	9	9	- 근로계약서 상 직인누락 - 근로계약서상 계약일 미기재
2015		1.12 ~ 1.19	10	10	10	- 근로계약서 상 직인누락 - 근로계약서상 계약일 미기재
2016		1.13 ~ 1.19	9	9	9	- 근로계약서 상 직인누락 - 근로계약서상 계약일 미기재

나. 위법·부당내용

- 산감기동대원 채용을 위하여 산감기동대 모집공고 후 해당 공고문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산감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용이 결정된 산감기동대원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도고면장)와 근로자(산감기동대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도 이후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 및 직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산림감시기동대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감시기동대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부정발급 내역

연번	장애인	발 급 일	장애유형	부당내역	적정처리
1	○○○	2013.11.01.	뇌병변 4급	보호자 주차가능	본인 주차가능
2	○○○	2014.10.27.	지체(하지기능) 2급	본인 주차가능	보호자 주차가능
3	○○○	2015.04.10.	지체(하지관절) 4급	본인 주차가능	보호자 주차가능
4	○○○	2016.07.05.	청각 5급	보호자 주차불가	본인 주차불가
5	○○○	2016.08.01.	청각 2급	보호자 주차불가	본인 주차불가

나. 위법·부당내용

- 등록장애인은 자동차 표지발급에 있어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의 「제4장(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 그런데 도고면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 외 2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해당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용’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보호자용 표지’로 부당하게 발급하였으며, ○○○ 외 1인에 대하여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임에도 장애인 ‘본인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발급된 자동차 표지를 적정하게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효도수당 지급대상 부적정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지급 현황

연번	지급 기간	실제 지급대상자	적정 지급대상자	비고
1	2011. 1. ~ 2016. 8.	○○○(1대)	○○○(2대) 또는 ○○○(3대)	
2	2011. 1. ~ 2016. 8.	○○○ (2대 ○○○의 배우자)	○○○(2대) 또는 ○○○(3대)	

나.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에 의해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하며,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 그러함에도 도고면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 외 1개 세대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도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임차 용역비 선금지출 부적정

【부 서 명】 도 고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지급 현황

(단위:원)

연번	지출 건명	지급 일자	선금 지급액	부당 지급범위
1	냉온 정수기 임차료	2014. 1. 13.	862,680	4월 ~ 12월
2	냉온 정수기 임차료	2015. 1. 21.	857,100	4월 ~ 12월
3	프린터 임차료	2015. 4. 8.	924,000	7월 ~ 12월
4	냉온 정수기 임차료	2016. 1. 14.	932,580	4월 ~ 12월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기본원칙 중 하나로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완료된 때 지급 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그러나 도고면 에서는

위와 같이 프린터 임차비 등 4건을 용역 계약하여 이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제한된 임차비 선금지급 범위인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등 선금지급 일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건에 대한 임차비를 상반기에 선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 등의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환사유 발생 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게 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도고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수범사례

① ‘행복한 밥상 차려드리기’ 실시

- 일 시 : 분기별(년 4회)
- 대 상 :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 내 용 : 행복키움 추진 단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호에 맞춘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말벗 서비스 및 청소 등을 지원
- 기대효과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안부 확인 및 욕구 파악
 - 복지대상자와 행복키움 추진단원의 신뢰관계 형성

작성자 : 도고면 ○○○○○ 행정6급 성명 ○○○(3195)

② 두유 모니터링 실시

- 일 시 : 월 2회 실시
- 대 상 : 30명(저소득 취약계층)
- 추진내용 :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자를 발굴 가정방문 하여 두유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복지대상자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안부 확인 및 욕구 파악

작성자 : 도고면 ○○○○○ 행정6급 성명 ○○○(3195)